

2015년 02월 14일 경찰공무원(순경)채용 필기시험문제 해설

과목 : 경찰학개론

해설 : 송 광 호

◆ 문제 분석표 ◆

구분	전체문제수 (20)	목차	세부문제수	박스형 개수문제	특징
총문	9	경찰학서론	1번(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		1. 총론 : 각론 = 9 : 11 2. 박스형 문제 = 1문제 3. 박스형 개수문제 = 4문제 4. 조문문제 = 15문제 5. 판례문제 = 0문제 6. 문제의 난이도 : 중상급 7.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에 나오지 않는 문제설문이 상당수 출제되었음. 8. 최근 사회의 이슈가 되어 입법된 부분도 출제됨(예 아동학대에 관한 특별법 문제). 9. 최근 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령에서 3문제가 출제되었고, 이 중에는 손실보상과 관련된 문제가 깊이있게 출제된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10. 한국경찰사, 비교경찰론, 경찰수사론, 기타 등에서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음. 11. 기출문제집만 보거나 간단한 모의고사 문제만을 가지고 공부했을 경우 약 70대를 넘기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경찰철학론	2번(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_조문	2번	
		한국경찰사			
		비교경찰론			
		경찰행정법	조직법 : 3번(징계위원회)_조문 7번(경찰공무원의 임용)_조문 작용법 : 4번(『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반)_조문 5번(『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무기사용)_조문 6번(『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손실보상)_조문	3번 6번	
각론	11	경찰관리론, 통제론	8번(『국가재정법』 상 경찰예산의 집행)_조문 9번(『보안업무규정』 상 비밀)_조문		[수험대책] 11. 기본서를 성실하게 공부할 것. 12. 최근에 개정된 법령과 행정규칙을 소홀히 하지 말 것. 13.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입법된 부분에 주의할 것. 14. 기본서, 실무문제집, 기출문제집, 난이도에 맞는 모의고사를 충분히 공부할 것
		생활안전론	10번(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11번(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_조문 12번(『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가정폭력범죄)_조문 13번(『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응급조치)_조문	11번	
		경찰경비론	14번(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경찰교통론	15번(『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처벌기준)_조문		
		경찰정보론	16번(집시법)_조문 17번(정보의 분류)		
		경찰보안론	18번(보안관찰대상자와 기간)_조문 19번(『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상 기본원칙)_조문		
		경찰외사론	20번(국제수배서)		
		경찰수사론			
		기타			

※ DAUM 카페 “경찰실무교실-송광호”에 판례, 조문, 단문형 매일테스트, 유료 모의고사도 많은 이용바랍니다.

<http://cafe.daum.net/no1police>

1.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찰활동을 의미한다.
- ② 정보경찰활동과 사법경찰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해당한다.
-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에 해당한다.
- ④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행정조직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한 개념에 해당한다.

정답 ③

출처 20150214일경특채경찰학개론_1번

- ①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14쪽 26번의 ①
- ②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12쪽 19번의 다,라번
- ③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13쪽 23번의 ③번
- ④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13쪽 23번의 ②번

출제영역 경찰학총론 > 경찰학서론

난이도 중하급

- 해설 ① (옳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찰활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을 말한다.
- ② (옳음) 정보경찰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속하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속하지 않는 이유는 국가목적적 작용에 해당하고 비권력적 작용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법경찰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속하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속하지 않는 이유는 사건발생 이후 범죄진압과 수사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상이 피의자와 참고인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 ③ (틀림), ④ (옳음)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된 것이다. 그러나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조직을 중심으로 파악된 것이다.

정리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비교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구별기준	실정법의 규정여부 → 조직중심	작용의 성질 → 작용(성질)중심
경찰의 의미	그 작용의 성질을 불문하고 실정법상 일반경찰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작용을 의미 (1) 보통경찰행정기관이 관장하는 모든 행정작용 (2)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활동	(1) [행정법학계](형식적 경찰조직과 무관하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을 근거로 국민에게 명령·강제함으로써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적 작용을 의미함. → 공통적인 법적 특성을 표현함(X) → 경찰권의 발동범위와 성질을 표현함(O) (2) [경찰학계] 최근에는 공공질서 유지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 작용으로 폭넓게 정의함. → 경찰의 본질을 나타내는 개념 : 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②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라는 2대 임무를 ① 범죄와 연관된 영역, ② 범죄와 무관한 영역으로 구분하여 엄밀하게 재정의하고자 함.
성질	실무상 정립된 경찰개념 → 각국의 전통이나 현실적 환경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시대와 국가에 따라 개념의 차이가 발생함	(1) 학문적으로 정립된 경찰개념. → 독일행정법학(↔ 프랑스행정법학(X))에서 유래 (2) 이른바 '일반조항'의 존재를 전제로 경찰관청에 대한 권한의 포괄적 수권과 법치국가적 요청을 조화키 위해 구성된 도구개념
범위	(1) 형식적 의미의 경찰 = 『경찰법』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규정된 경찰의 직무범위 (2) 행정경찰의 성질을 가진 것과 사법경찰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3) 법령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속하지 않는 행정작용을 일반 경찰기관이 관장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속함 ↔ 작용의 종류는 불문 ① 권력작용에 속하여도 경찰조직이 직접 담당하지 않으면 경찰이 아님 ② 권력작용과 무관해도 경찰조직이 현실적으로 수행하면 경찰로 간주(예) 계몽·지도·봉사·지원, 정보경찰	(1)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의 일부로서, 행정경찰을 의미 (2) 경찰조직이 아닌 다른 국가기관의 권력작용(명령, 강제)을 포함하는 개념 → 일반행정기관에서도 '경찰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때의 '경찰기능'은 '일반행정기관'이라는 조직적 측면에서 바라본 실질적 ↔ 행정(X) 경찰개념을 의미함 ← '일반행정기관'이라는 '조직'이 '경찰기능'을 하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 중심의 개념이 아니고 작용·역할·기능 중심의 개념이므로 '일반행정기관'이라는 '조직'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속하는 역할·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의미. (3) 현실적으로 경찰이 수행하고 있어도 국민에게 명령 혹은

	활동, 대공경찰활동) 강제하는 것이 아니면 경찰의 개념에서 배제(예 경찰의 서비스활동, 순찰활동, 방법지도, 지리안내 → 실질적의미의 경찰(X)) (4) 사회목적적 행정 중 소극목적행정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나, 국가목적적 행정행위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되지 않음
예	경찰법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②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③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④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⑤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⑥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⑦ 그 밖의(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1) 건축허가와 같은 건축경찰 (2) 유흥주점의 허가과 같은 위생경찰 (3) 산업경찰 (4) 산림경찰 (5) 철도경찰 (6) 경제경찰

2.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4촌 이내 친족 포함)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 ㉡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
- ㉢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①

출처 20150214일경특채경찰학개론_2번

- ㉠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67쪽 38번의 ②번
㉡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67쪽 39번의 ③번
㉢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67쪽 39번의 ①번

출제영역 경찰학총론 > 경찰윤리론

난이도 중급

해설 ① 모두 틀림.

㉠ (틀림)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 포함(x))한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당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제1항.)

㉠ (틀림) 공무원의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2호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 승인 (x))**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경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제1항). 그러므로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획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㉔ (틀림)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x)). 이런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1항, 제2항).

조 문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013.12.9.] [경찰청훈령 제721호, 2013.12.9., 일부개정]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해당 공무원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불복종 이유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2호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금전차용(부동산대여) 신고서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을 말하며, 경징계란 정직, 감봉 및 견책을 말한다.
-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 ㉢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소속이 다른 2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 등 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모두를 관할하는 바로 위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 | |
|------|------|
| ① 0개 | ② 1개 |
| ③ 2개 | ④ 3개 |

정답 ④

출처 20150214일경특채경찰학개론 3번

- ㉠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152쪽 이론, 189쪽 91번의 가번
- ㉡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189쪽 91번의 라번
- ㉢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191쪽 94번의 나번
- ㉣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에는 없으나 기본 조문에 해당함.
- ㉤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191쪽 94번의 가번

출제영역 경찰학총론 > 경찰조직법

난이도 중상급

해설 ④ "㉠, ㉡, ㉢" 3개 틀리고, "㉣, ㉤" 2개 옳음.

㉠ (틀림)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을 말하고, "경징계"란 감봉 및 견책(↔ 정직(x))을 말한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정의)).

㉡ (틀림)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경정(x))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제4조(징계위원회의 관할) 제2항 본문).

㉢ (옳음)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

하고,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 본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각 징계위원회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3항). 이 조문은 2013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명시한 바 있다.

- ㉔ (틀림)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leftrightarrow 2/3$ (x))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제1항).

- ㉕ (옳음)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5조(관련 사건의 관할) 제2항

조 문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및 견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4조(징계위원회의 관할)

-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4.11.19.>
 1.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서, 경찰기동대·해양경비안전서 등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 및 정비창: 소속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
 2. 전투경찰대 및 경비합정 등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 소속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

- ③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이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4.11.19.>
- ④ 제2항 단서 또는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 관할에서 제외되는 경찰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은 바로 위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5조(관련 사건의 관할)

- ① 상위 계급과 하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상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상급 경찰기관과 하급 경찰기관에 소속된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다만, 상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감독상 과실책임만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각각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② 소속이 다른 2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모두를 관할하는 바로 위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③ 「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경찰청·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분리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제4조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6.]

제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에 두는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소속 공무원(국민안전처장관은 제외한다)의 수가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을 제외한 위원 수에 미달되는 등의 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②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을 임명한다. 다만, 보통징계위원회의 경우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의 수가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을 제외한 위원 수에 미달되는 등의 사유로 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사 이하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7급 이하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하의 감봉 또는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등 사건만을 심의·의결한다.
- ③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중앙징계위원회
 - 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경찰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정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다.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보통징계위원회
 - 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나. 대학에서 경찰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다.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계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에 먼저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이 된다.
[전문개정 2013.10.22.]
-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 ①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의결서의 이유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13.10.22.>
1.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2. 증거에 대한 판단
 3. 관계 법령
- ③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정 리

징계위원회

종 류	구 성	원칙적 관할사건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	경무관 이상의 징계사건의 심의·의결 (「경찰공무원법」 제26조 제1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1)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에 설치(「경찰공무원 징계령」 제3조 제2항) (2)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함. (3) 해양경찰청에 두는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소속 공무원(해양경찰청장은 제외함)의 수가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을 제외한 위원 수에 미달되는 등의 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음(「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징계등) 사건(「경찰공무원 징계령」 제4조 제1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1) 경찰기관(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 해양경비안전서, 정비창(整備廠), 경비합정 및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	(1) 원칙 :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찰(↔ 경정(x))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함. (2) 예외 ① 정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서, 경찰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이 지정하는 <u>경감(↔ 경정(x))</u>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 설치(↔ <u>운전면허시험관리단(x)</u>)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3조 제2항) (2)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3명 이상 7명 이하(↔ 5인(x))</u>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함(『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기동대·해양경비안전서 등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 및 정비창 : 소속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 ② 전투경찰대 및 경비합정 등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 : 소속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4조 제2항)
관련사건의 관할추가	(1) 상위 계급과 하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상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상급 경찰기관과 하급 경찰기관에 소속된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 다만, 상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감독상 과실책임만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상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을 관할하는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각각 심의·의결할 수 있음. (2) 소속이 다른 2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모두를 관할하는 바로 위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u>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찰공무원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x)</u>)에서 심의·의결함. (3) 「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국민안전처·경찰청·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음. (4) (1)과 (2)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는 (1)과 (2)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분리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해당 관할 징계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음.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5조)	
위원장	(1)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함(『경찰공무원 징계령』 제8조 제1항). (2)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계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에 먼저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이 됨(『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4항). (3)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함(『경찰공무원 징계령』 제8조 제2항). (4)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경찰공무원 징계령』 제8조 제3항).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 계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에 먼저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이 위원장이 됨(『경찰공무원 징계령』 제8조 제4항).	
자격	(1)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u>경감(x)</u>)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함. ↔ 다만, 보통징계위원회의 경우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의 수가 (2)에 따른 민간위원을 제외한 위원 수에 미달되는 등의 사유로 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사 이하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7급 이하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의 관할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하의 감봉 또는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등 사건만을 심의·의결함(『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2항). (2)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경찰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와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3항). → 이렇게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의2). ① 중앙징계위원회 ㉠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대학)에서 경찰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정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② 보통징계위원회 ㉠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대학에서 경찰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징계요구	(1)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2)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u>지체없이</u>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u>요구할 수 있다(x)</u>). →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한 반드시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는 <u>기속행위</u> → 이 경우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와 확인서(= 징계의결서등)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	

	(2)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서등을 첨부하여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함(『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2항). (3) (1)과 (2)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하여야 함(『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3항). (4) 경찰기관의 장이 (1)과 (2)에 따라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을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함. ↔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4항). (5) 경찰기관의 장은 (1)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1)에 따른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함. ↔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5항). (6)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경찰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함(『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1항). (7) (6)에 따라 징계 사유를 통지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함(『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2항). (8) (6)에 따라 징계 사유를 통지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징계 사유를 통지한 경찰기관의 장에게 회답하여야 함(『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3항).
진술기회제공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 또는 대리인에게 반드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함 → 이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무효(절차상 하자)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	(1)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2일(x))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함(『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제1항). (2)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음(『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제2항). (3) 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음. ↔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등 의결을 할 때에는 관보 게재의 사유와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어야 함(『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제3항). (4) (3)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징계등 사건 또는 형사사건의 사실 조사를 기피할 목적으로 도피하였거나 출석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징계등 심의 대상자나 그 가족에게 직접 출석 통지서를 전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출석 통지서를 보내 이를 전달하게 하고, 전달이 불가능하거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게 한 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음(『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제4항). (5)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국외 체류 또는 국외 여행 중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징계등 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음 →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음(『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제5항).
심문과 진술권	(1)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하고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음(『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3조 제1항). (2)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서면 또는 말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3조 제2항). (3)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3조 제3항). (4)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 또는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3조 제4항). (5)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 조사를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증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음(『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3조 제5항).
제척, 기피 및 회피	(1)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함(『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5조 제1항). (2)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疏明)하고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5조 제2항). (3) 징계위원회는 (2)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5조 제3항).

	조 제3항). (4)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1)이나 (2)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음(『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5조 제4항). (5) 징계위원회는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척, 기피 또는 회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경찰기관의 장에게 위원의 보충 임명을 요청하여야 함(『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5조 제5항). (6) (5)의 경우에 해당 경찰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위원을 보충 임명하여야 함 ↔ 다만, 위원의 보충 임명이 곤란할 때에는 그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철회하고,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함(『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5조 제6항).
의 결	(1) 의결기한 ①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제1항). ②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되었을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등 의결 기한에서 제외함(『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제2항). (2) 의결정족수(『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4조 제1항) ①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2/3 (×))의 찬성으로 의결(= 일반의결정족수) ②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봄. (3) 의결의 효력 : 징계의결은 그 의결만으로써는 그 내용에 관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그 임명자가 그 의결을 실시함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함 (4) 의결 형식 : 위의 의결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의결서)로 함. 이 경우 의결서의 이유란에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함. ①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증거에 대한 판단 ③ 관계 법령(『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4조 제2항) (5) 의결서의 내용 ①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인적사항 ② 의결주문 ③ 적용 법조문 ④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및 증명 자료의 인정 여부 ⑤ 징계등 심의 대상자 및 증인 출석 여부 ⑥ 정상 참작 여부 ⑦ 의결 방법 ⑧ 심의 결론 (6) 의결의 비공개 :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4조 제3항). (7) 비밀누설 금지 :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됨(『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1조).

4.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유치장을 둔다.
- 경찰관 직무의 범위에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 협력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정답 ④

출처 20150214일경특채경찰학개론 4번

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문제임.

출제영역 경찰학총론 > 경찰작용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난이도 중급

- 해 설** ① (옳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제2항
 ② (옳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③ (옳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유치장)
 ④ (틀림) 경찰관은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의 직무를 수행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조 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 2014.11.21.] [법률 제12600호, 2014.5.20., 일부개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전문개정 2014.5.20.]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 ②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騷擾)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0.]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5.20.]

제9조(유치장)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유치장을 둔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4.5.20.]

5.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경찰관의 무기사용 시 상대방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 ② 무장간첩이 투항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는 때
- ③ 「형법」 상 정당방위·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 ④ 무기를 소지한 자가 3회 이상 투기·투항명령에 불응하며 항거하는 때

정 답 ①

출처 20150214일경특채경찰학개론_1번

2014년판 경찰공채회 경찰실무종합 250쪽 107~108번 참고

출제영역 경찰학총론 > 경찰작용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난이도 중하급

해 설 ① (옳음)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

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제1항).

조 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 2014.11.21.] [법률 제12600호, 2014.5.20., 일부개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 나.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 다. 제3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 라.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3.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 ② 제1항에서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 ③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共用火器)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5.20.]

6.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 ㉢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출처 20150214일경특채경찰학개론_6번

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손실보상제도가 포함되어서 출제됨.

출제영역 경찰학총론 > 경찰작용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난이도 중상급

해설 ② “㉠, ㉡” 2개 틀리고, “㉢, ㉣” 옳음.

㉠ (틀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 제2항).

㉡ (틀림)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시행령』 제11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항).

㉢ (옳음) 『경찰관 직무집행법시행령』 제10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제5항, 제6항

㉣ (옳음) 『경찰관 직무집행법시행령』 제9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제2항

조 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 2014.11.21.] [법률 제12600호, 2014.5.20., 일부개정]

제11조의2(손실보상)

-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④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4.5.]

조 문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9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3.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②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본조신설 2014.2.18.]

제10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 ① 법 제11조의2에 따라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청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청구서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의 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③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찰청장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경찰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2.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통지서
- ⑤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⑥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4.2.18.]

제11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11.19.>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등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경찰 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등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14.2.18.]

7.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지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 ②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③ 경찰청장은 순경에서 5년 이상 근속자를 경장으로, 경장에서 6년 이상 근속자를 경사로, 경사에서 7년 6개월 이상 근속자를 경위로, 경위에서 12년 이상 근속자를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
- ④ 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정답 ①

출처 20150214일경특채경찰학개론 7번

①②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에는 없는 설문임.

③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182쪽 73번의 ㉔번 해설

④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175쪽 58번 해설

출제영역 경찰학총론 > 경찰조직법

난이도 중상급

해설 ① (틀림) 경찰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지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② (옳음) 『경찰공무원법』 제8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③ (옳음) 『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2(근속승진) 제1항

④ (옳음) 『경찰공무원법』 제10조(시보임용) 제1항

조문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5조(임용시기)

① 경찰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② 임용일자는 그 임용장이 피임용자에게 송달되는 기간 및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조문 『경찰공무원법』 [시행 2015.3.31.] [법률 제12912호, 2014.12.30., 일부개정]

제8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1.5.30.]

제10조(시보임용)

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및 이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정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1.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정하여진 교육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

2.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위계급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임용예정 계급에 상응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해당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4.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5.30.]

제11조의2(근속승진)

① 경찰청장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경장, 경사, 경위,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2.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이상 근속자

3.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7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12년 이상 근속자
-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경찰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8. 「국가재정법」 상 경찰예산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청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경찰청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④

출처 20150214일경특채경정학개론 8번

2014년판 경찰공채회 경찰실무종합에 없는 실문임.

출제영역 경찰학총론 > 경찰관리론 > 예산관리

난이도 중상급

- 해설 ①(옳음) 각 중앙관서의 장(경찰청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42조(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 ②(옳음)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43조(예산의 배정) 제2항).
- ③(옳음)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 ④(틀림) 각 중앙관서의 장(경찰청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있다(x))(『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문 『국가재정법』 [시행 2015.1.1.] [법률 제12858호, 2014.12.23., 타법개정]

제42조(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3조(예산의 배정)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정리 예산의 집행

개념	(1)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재원을 조달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 (2) 집행은 예산의 배정 → 재배정 → 지출원인행위 → 지출행위 순으로 진행됨				
배정	<table border="1"> <tr> <td>개념</td><td>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집행할 수 있는 금액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절차</td></tr> <tr> <td>배정절차</td><td>(1) 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 경찰청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td></tr> </table>	개념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집행할 수 있는 금액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절차	배정절차	(1) 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 경찰청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개념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집행할 수 있는 금액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절차				
배정절차	(1) 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 경찰청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국가재정법』 제42조). (2) 예산의 배정(『국가재정법』 제43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1)에 따른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함.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경찰청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함.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음.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①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음.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절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①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예산집행지침의 통보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국가재정법』 제44조). (4)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각 중앙관서의 장(경찰청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음(『국가재정법』 제45조).
	배정권자	예산의 배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행함
	배정의 효력	예산의 집행은 예산의 배정으로 시작 됨
지 출		지출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행위로 구성
	구 성	지출원인행위 (1) 재무관이 세출예산·계속비·국고채무부담행위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행하는 것 (2)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지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기로 결정하는 행위
		지출행위 (1) 계약체결을 한 후 자금배정을 받은 범위 내에서 국고를 지출하는 행위 (2) 지출관이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에게 계좌이체를 하는 것을 의미함.
	지출의 범위	(1) 지출원인행위(대부분 계약형태)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 (2) 국회를 통과하여 예산이 확정되었더라도 해당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음
	지출의 원칙	(1) 계좌이체에 의한 지급 (2) 당해 회계연도 개시 후에 지출 (3)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지출 (4) 확정채무가 존재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한 때 지출
	지출의 절차 (『국고금관리법』 제22조)	(1)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1조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 재무관)이 그 소관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 지출관)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함. (2) 지출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3)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지출관이 지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 채권자등)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함. (4) 지출관은 정보통신의 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등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5) (1)·(3) 및 (4)에 따른 지출은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함.
	관서운영경비의 지출	후술함.
예산배정 방법	정기배정	4분기별 연간배정계획에 의거 정기적으로 예산배정, 기획재정부장관이 정기배정함.
	긴급배정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
	조기배정	정기배정 계획자체를 1/4 또는 2/4분기에 앞당겨 집중배정
	당겨배정	당초의 연간 정기배정계획보다 지출원인행위를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배정유보	
	수시배정	수시배정의 요구를 받아 해당사업의 추진상황, 문제점 등 검토 후 예산배정.

		통상 수시배정사업은 정기배정에서 제외함.
	감액배정	
예산 집행의 신속성 유지방안	예산의 이용	(1) 세출예산이 정한 입법과목(소관, 장, 관, 항) 간의 상호융통 (2)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
	예산의 전용	(1) 세출예산이 정한 행정과목(세항, 목) 간의 융통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
	예산의 이체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 예산의 목적은 변경함이 없이 예산집행에 관한 책임소관을 변동시키는 것
	이월	(1)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그 지출을 필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2) 사고이월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 ↔ 국회의 사전 의결 (X)
예비비 배정과 사용	의의	(1) 개념 :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금액 (2)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용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국가재정법』 제22조 제1항). (3) (2)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 목적을 지정할 수 없음(『국가재정법』 제22조 제2항).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국가재정법』 제51조)	(1) 예비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함. (2) 각 중앙관서의 장(경찰청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만,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구조,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概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음. (3) 기획재정부장관은 (2)에 따른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함. (4)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음.
	예비비사용 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국가재정법』 제52조)	(1) 각 중앙관서의 장(경찰청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 기획재정부장관은 (1)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함. (3)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총괄명세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함. (4)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함.
담당부서	재무관	지출원인권자로서 계약체결 등 채무부담을 결정하는 자 예 경찰서의 경무과장
	지출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출행위를 담당하는 자 예 경찰서의 경리계장

9. 「보안업무규정」 상 비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이 영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 ②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I 급비밀·II 급비밀 및 III 급비밀로 구분한다.
- ③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I 급비밀로 한다.
- ④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II 급비밀로 한다.

정답 ④

출처 20150214일경특채경학개론_9번

2014년판 경찰공채회 경찰실무종합 297쪽 15번 참고

출제영역 경찰학총론 > 경찰관리론 > 보안관리

난이도 중급

해설

① (옳음) 『보안업무규정』 제2조(정의) 제1호

② (옳음)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

③ (옳음)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 제1호

④ (틀림)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Ⅲ급비밀**(↔ **Ⅱ급비밀(x)**)로 한다(『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 제3호).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Ⅱ급비밀**로 한다(『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 제2호).

조문 『보안업무규정』 [시행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1.10.7.>

1. "비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이 영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라 함은 헌법·정부조직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군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를 말한다.
3. "암호자재"라 함은 통신보안을 위하여 통신문의 내용을 보호할 목적으로 문자·숫자·기호등의 암호로 만들어진 문서나 기구를 말한다.

제4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I 급비밀·II급비밀 및 III급비밀로 구분한다.

1.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I 급비밀로 한다.
2.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II급비밀로 한다.
3.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III급비밀로 한다.

10.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CPTED는 주거 및 도시지역의 물리적 환경설계 또는 재설계를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고자 하는 기법이다.
- ② '자연적 감시'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 가시권을 최대 확보, 외부 침입에 대한 감시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행위의 발견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범죄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는 원리이다.
- ③ '영역성의 강화'는 지역사회에 설계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이다.
- ④ '자연적 접근통제'는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원리이다.

정답 ③

출처 20150214일경특채경학개론_10번

2014년판 경찰공채회 경찰실무종합 356~357쪽 29번 참고

출제영역 경찰학각론 > 생활안전경찰론 > 지역경찰활동

난이도 중급

해설

① (옳음)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은 (범죄인 교화보다는)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 도시환경의 범죄환경에 대한 방어적인 디자인(Defensive Design)을 통해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도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고 안전감을 유지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전략을 말한다.

③ (틀림) '**활동성의 증대**' 또는 '**활동의 활성화**'(↔ **영역성 강화(x)**)는 지역사회에 설계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이다. 예를 들면, 놀이터·공원의 설치,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 증대, 벤치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 등을 들 수 있다.

정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개념

(1) 범죄예방이론의 상황적 범죄예방론 중 생태학적이론에 기인한 이론 → 환경적인 요소가 인간의 행동 및 심리적 성향을 자극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환경행태학적 이론에 기초하고 있음.

① 여기에서 '환경'이란 인간이 접촉하고 주변에서 접하는 모든 것을 의미함.

② '설계'란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미리 이와 관련된 계획과 도면, 세부내역을 마련하는 일을 의미함.

- ③ CPTED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며, 이에 따르는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과정을 말함 ← 범죄원인을 개인적 요인보다는 환경적 요인에서 찾고 있음.
-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전략(CPTED)은 최첨단 범죄예방 환경설계로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범죄억제와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제도이며 시큐리티시스템과 주차시스템을 접목시키는 조직적·기계적 접근방법이 많이 고려되고 있음.
- (3)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 ① 개념
- ㉔ (범죄인 교화보다는)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 도시환경의 범죄환경에 대한 방어적인 디자인(Defensive Design)을 통해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도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고 안전감을 유지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전략
- ㉕ 기존의 경찰력에 의존해 왔던 범죄예방과 범죄진압이 한계에 이르렀고 범죄는 더욱 다양화·지능화·무동기화·홍포화됨에 따라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주거 및 도시지역의 물리적 환경 설계 또는 재설계를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고자 하는 기법임.
- ② 전통적 CPTED는 공격자가 보호대상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주로 활용하고(예를 들면, 보호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깊은 함정을 파놓은 일, 성벽을 쌓아 놓은 일, 문을 견고하게 만드는 일 등이 이에 해당함), 현대적 CPTED는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함.
- ③ 전통적·고전적 CPTED 접근방식은 단순히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대상을 강화하는 방법(THA : Target Hardening Approach)을 강조하여, 가급적 공격자가 보호하는 대상에 원천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주로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이런 물리적 접근통제 방법은 소극적인 성격을 가짐.
- 예 과거 로마교황에 대한 암살위협이 수차례 이루어지면서 교황의 대중행사 참석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를 제한 하자는 주장
- ④ 현대적 의미의 CPTED는 소극적인 THA 방식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범죄문제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보호대상물에 접근하더라도 이를 쉽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기술을 고안하는 것을 말함.
- 예 카톨릭계 인사들은 교황의 공식행사참석은 그대로 하되, 투명한 방탄유리차량을 이용하여 교황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함.
- (4) CPTED의 기본전략
- ① CPTED의 기본전략은 ㉑ 자연적인 접근통제, ㉒ 자연적인 감시, ㉓ 영역성의 강화라는 세가지 차원에서 출발함(제1차적 기본전략).
- ② '접근통제'는 범죄의 기회를 줄일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설계개념임 → 접근통제 전략은 전형적으로 ㉑ 조직적인 통제(경비원 운용 등), ㉒ 기계적인 통제(장벽, 차단장치, 잠금장치 등), ㉓ 자연적인 통제(공간 구획 등)로 구분됨.
- ③ '감시'는 침입자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관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만들어진 설계개념임 → 감시전략은 접근통제와 마찬가지로 ㉑ 조직적인 감시(경비원 배치 및 순찰활동 등), ㉒ 기계적인 감시(경비조명, 감시카메라 등), ㉓ 자연적인 감시(창문 등)로 분류됨.
- ④ 전통적인 접근통제와 감시는 환경의 이용을 최소화 하거나 무시하면서 단지 조직적·기계적 예방방법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음.
- ⑤ 최근에는 조직적·기계적 전략보다는 자연적인 기회를 활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을 강조하고 있음 → 1차적으로 자연적 접근통제와 감시방법을 고려하고 2차적으로 조직적·기계적 접근통제와 감시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 ⑥ 영역
- ㉔ '영역'이란 사람이 평상시 익숙하고 친숙하여 자신의 것으로 느끼는 장소라고 할 수 있음 → '영역성'이란 어느 지역에 대한 합법적인 이용을 의미하며, 영역적 통제는 경계의 설정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이러한 영역성은 특정 공간에 대한 소유의식 또는 지배의식을 의미하는 것임.
- ㉕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들은 일정한 영역성을 가지고 있음 → 바로 방어공간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임.
- 예 사람은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집)에 대해서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고, 또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에도 자신을 둘러싼 일정한 공간에 대해서 영역성을 확보하고자 함.
- ㉖ 접근통제와 감시와 같은 물리적 설계가 영역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 물리적 설계를 통해서 소유의식 및 소속의식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배타적 영역성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 환경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영역보호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범죄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위협을 느끼게 할 것임.
- ⑦ CPTED는 환경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범죄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적·기계적 전략'에서 '자연적 전략'으로 그 중심을 바꾸는데 기여하였음.
- (5) 목표 : 개인의 본래 활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시킴.

비판 (1) 전이효과 : 범죄의 기회를 줄여도 실제적으로는 범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범죄가 다른 곳으로 전이되어 전체범죄는 줄지 않음
(2) 국가통제사회 가능성 : 범죄의 기회를 줄이기 위해 국가에 의한 사회통제의 정도가 심화되고, 요새화된 사회를 만들어 인권이 나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유래 방어공간 (1) 제이콥스(Jacobs) : 주택의 고층화가 범죄유발 요인이라고 주장하며,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구별, 도로상의 눈을 고려한 건물방향, 도로가 빈번하게 이용되도록 설계할 것을 주장함.
(2) 오스카 뉴먼(Oscar Newman, 1972, 저서 「방어공간」)

- ㉔ (음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 조 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가정폭력처벌법)[시행 2014.9.29.] [법률 제12340호, 2014.1.28., 일부개정]
-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 [전문개정 2011.4.12.]
- 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4.12.]
-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4.12.]
- 제29조(임시조치)
-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② 동행영장에 의하여 동행한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인도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49조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⑥ 제1항제4호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 ⑦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⑧ 판사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⑨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⑩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9항에 따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2014.12.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1.8.4., 2012.1.17., 2014.12.30.〉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라.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학대)의 죄
 -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 7의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1.4.12.]

1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응급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을 분리·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을 인도받은 보호시설·의료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응급조치는 48시간을 넘을 수 없다.
- ④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③

출처 20150214일경특채경찰학개론_13번

2014년판 경찰공채회 경찰실무종합에 없는 문제임.

제정된 후 얼마되지 않아서 출제된 문제임.

출제영역 경찰학각론 > 생활안전경찰론

난이도 중상급

해설 ① (옳음)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의 조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할 때에는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제1항).

② (옳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제2항

③ (틀림) ㉠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에 따른 응급조치는 72시간(↔ 48시간(x))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검사가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연장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제3항).

④ (옳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제4항

조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아동학대처벌법)[시행 2014.9.29.] [법률 제12341호, 2014.1.28., 제정]

제12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②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피해아동을 분리·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을 인도받은 보호시설·의료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검사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연장된다.

④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응급조치결과보고서에는 피해사실의 요지,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응급조치를 저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가운데 특정사안의 불만집단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불만 및 분쟁요인을 찾아내어 해소

시켜 주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수승화법
- ② 전이법
- ③ 지연정화법
- ④ 경쟁행위법

정답 ①

출처 20150214일경특채경찰학개론_14번

2014년판 경찰공채회 경찰실무종합 528~529쪽 참고

출제영역 경찰학각론 > 경찰경비론 > 다중범죄

난이도 하급

해설 ① (옳음)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가운데 특정사안의 불만집단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불만 및 분쟁요인을 찾아내어 해소시켜 주는 방법을 선수승화법이라 한다.

정리 다중범죄 진압에 관한 정책적 치료법

선수 승화법	특정사안의 불만집단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불만 및 분쟁요인을 찾아내어 해소시켜주는 방법 예 재건축과 관련하여 일부 세입자들이 이주비 보상 및 영구임대 아파트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려고 한다는 첩보가 입수되자 구청장 및 재건축 조합장과의 면담을 주선하여 대화에 의한 타협을 보게 하는 방법 예 언론기관의 노조단체가 임금문제로 인해 파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파업에 앞서 임금협상을 통하여 파업을 방지하였다.
전이법	다중범죄의 발생징후나 이슈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원래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도록 하는 방법
지연 정화법	불만집단의 고조된 주장을 시간을 끌며 이성적으로 사고할 기회를 부여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을 둔화시켜서 흥분을 가라앉게 하는 방법
경쟁 행위법	불만집단과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자동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 예 서울지하철 노조가 객관적으로 명분 없는 지하철 운행중단을 실시하자 언론에 일반시민의 불만과 비난의 목소리가 크게 부각시켜 스스로 해산하도록 하는 방법 예 외국계 석유공급업체인 A회사의 노조가 객관적으로 명분 없는 석유공급의 중단을 실시하자 언론에 일반시민의 불만과 비난의 목소리가 크게 부각되었다. 이에 당황한 외국계 석유공급업체인 A회사의 노조는 스스로 석유공급업무에 복귀하였다.

15.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최초 위반 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2%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2회 위반 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이상 0.2%미만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3회 이상 위반 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③

출처 20150214일경특채경정학개론_15번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583쪽 4번 참고

출제영역 경찰학개론 > 경찰교통론 > 주취운전

난이도 중상급

해설 ③ (틀림) 2회 위반 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이상 0.2%미만인 경우는 1회 위반시와 동일하므로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조문 『도로교통법』 [시행 2015.1.29.] [법률 제12917호, 2014.12.30., 일부개정]

제148조의2(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8.]

정리 음주운전 처벌기준 세분화(법 제148조의2) : 음주수치 및 위반횟수에 따라 세분화함.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1~3년 징역/500만원~1천만원 벌금
	0.1~0.2%	6개월~1년 징역/300만원~500만원 벌금
	0.05~0.1%	6개월 이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	1~3년 징역/500만원~1천만원 벌금	
2회 위반	1회 위반시와 동일	
3회 이상 위반	1~3년 징역/500만원~1천만원 벌금	

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 ②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 ④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12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정답 ④

출처 20150214일경특채경정학개론_16번

- ①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660쪽 19번의 ①번 참고
- ②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663쪽 23번의 ②번 참고
- ③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672쪽 34번 참고
- ④ 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669쪽 29번 참고

출제영역 경찰학각론 > 경찰정보론 > 집회 시위의 업무처리

난이도 중하급

- 해설**
- ① (옳음)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主管者)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
 - ② (옳음) 누구든지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제1항).
 - ③ (옳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2항
 - ④ (틀림)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 24시간 이내(x))에 주최자에게 24시간(↔ 12시간(x))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 제1항).

조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약칭:집시법)[시행 2008.9.22.] [법률 제8733호, 2007.12.2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主管者)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4.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5. "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표지(標識)를 말한다.
6. "경찰관서"란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

-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완 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3.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7. 정보의 분류 중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략정보, 전술정보
- ② 적극정보, 소극(보안)정보
- ③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 ④ 인간정보, 기술정보

정답 ②

출처 20150214일경특채경찰학개론_17번

2014년판 경찰공채회 경찰실무종합 623쪽 18번 참고

출제영역 경찰학각론 > 경찰정보론 > 경찰정보의 의의

난이도 중하급

- 해설
- ① (틀림) 정보의 분류 중 사용수준에 따른 분류 : 전략정보, 전술정보
 - ② (옳음) 정보의 분류 중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 적극정보, 소극(보안)정보
 - ③ (틀림) 정보의 분류 중 분석형태에 따른 분류 :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 ④ (틀림) 정보의 분류 중 수집활동에 따른 분류 : 인간정보, 기술정보

정리 정보의 분류(문경환황규진, 경찰정보론, 경찰대학, 2014, 15-22면 참고)

1. 사용수준에 따른 분류 : 전략정보, 전술정보
2.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 적극정보, 소극(보안)정보
3. 정보출처에 따른 분류 : 근본-부차적 출처, 정기-우연 출처, 비밀-공개 출처
4. 정보요소에 따른 분류 :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과학
5. 분석형태에 따른 분류 :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6. 수집활동에 따른 분류 : 인간정보, 기술정보

18. 다음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안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하며,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으로 한다.

- ① ① 금고 ㉠ 3년 ㉡ 2년
- ② ① 금고 ㉠ 3년 ㉡ 3년
- ③ ① 자격정지 ㉠ 2년 ㉡ 2년
- ④ ① 자격정지 ㉠ 2년 ㉡ 3년

정답 ①

출처 20150214일경특채경찰학개론_17번

2014년판 경찰공채회 경찰실무종합 755쪽 4번, 5번 참고

출제영역 경찰학각론 > 경찰정보론 > 보안관찰
난이도 중하급

해설 ① (옳음)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하며, 보안관찰 처분의 기간은 (㉢ **2년**)으로 한다(『보안관찰법』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제1항).

조문 『보안관찰법』 [시행 2008.1.1.] [법률 제8435호, 2007.5.17., 타법개정]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 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①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
- ②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③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③

출처 20150214일경특채경찰학개론_19번
2014년판 경찰공채회 경찰실무종합에 없는 실문임.

출제영역 경찰학각론 > 경찰보안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난이도 중상급

해설 ① (옳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원칙) 제1항

② (옳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원칙) 제2항

③ (틀림)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시))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원칙) 제4항).

④ (옳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원칙) 제3항

조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북한이탈주민법)[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3호, 2014.5.28., 일부개정]

제4조(기본원칙)

①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

②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정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정의	북한 이탈주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설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지원	보호금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
	학력인정	보호대상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자격인정	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음.
	사회적응교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직업훈련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취업을 알선 할 수 있음(↔ 하여야 한다(X)).
	기 타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추가지원 · 정착금 지급 · 교육지원 · 의료보호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특별 임용	공무원으로 의 특별임용	북한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직위 · 담당직무 및 경력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음
	군인으로의 특별임용	북한의 군인이었던 자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 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음
협조 요청	정착지원을 위한 협조요청	(1) 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2) 협조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신변안전을 위한 협조요청	(1) 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등에게 동시설의 경비 · 치안유지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2)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진 행 단 계	발생 입국단계	기본원칙 (1)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함. (2)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함. (3)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4)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X))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함.
		보호신청 (1)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함)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함 ↔ ㉠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 가족의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3) (2)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보호결정	(1) 통일부장관은 보호조치 통보를 받으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회의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함. ↔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함. (2) 보호 여부를 결정한 통일부장관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이를 보호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야 함. (3)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 ①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② 살인 등 중대한 비정지적 범죄자 ③ 위장탈출 혐의자 ④ 체류국(滯留國)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⑤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⑥ 그 밖에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내입국교섭 (1) 해외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국내 입국을 위한 해당 주재국과의 교섭 및 그의 신병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정함. (2) 외교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해외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신병이송 시기 · 방법 등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요소가 현존하고도 명백한 때에는 국내 입국 즉시 통보할 수 있음.
	보호 · 관리단계	(1)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2) 협조요청 : 타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 (3) 사회적응교육 : 통일부장관이 정착지원시설에서 실시
	배출 · 정착단계	(1) 자격 등 인정 ① 학력 인정 :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② 자격 인정

㉠ 보호대상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음.

㉡ 통일부장관은 자격 인정 신청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음.

(2) 직업 알선, 취업보호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함 ↔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② 취업보호 기간 :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함.

③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④ 사업주가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할 때에는 그 취업보호대상자가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직위, 담당 직무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함.

⑤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상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⑥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취업을 알선할 수 있음.

↔ 취업보호의 제한

①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음.

㉠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
㉡ 근무태만,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지원금을 받게 한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음.

③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알려야 함.

(3) 특별 임용

(4) 각종 지원 : 주거지원, 정착금 지원, 교육지원, 의료보호비

① 주거지원 등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음.

㉡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그 주민등록 전입신고 한 날부터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하게 된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 소유권등)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음.

㉢ 소유권등의 등기신청은 보호대상자를 대리하여 통일부장관이 함 → 소유권등은 양도나 저당권 설정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그 등기신청서에 기록하여야 함.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② 정착금 등의 지원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 정착금품)을 지급할 수 있음.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함)의 활용 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로금(報勞金)을 지급할 수 있음.

㉢ 정착금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음.

(5)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 시행령 제42조(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함.

② 신변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에 따른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20.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적색수배서는 국제체포수배서로서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발행한다.

② 녹색수배서는 가출인의 소재 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을 확인할 목적으로 발행한다.

③ 흑색수배서는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을 파악할 목적으로 발행한다.

④ 오렌지수배서는 폭발물 등에 대한 경고목적으로 발행한다.

정답 ②

출처 20150214일경특채경찰학개론 20번

2014년판 경찰공채회 경찰실무종합 805쪽 참고

출제영역 경찰학개론 > 경찰외사론 > 외사실무

난이도 중하급

해설 ② (틀림) **항색수배서**(↔ **녹색수배서**(x))는 가출인의 소재 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을 확인할 목적으로 발행한다.

정리 국제수배서

국제수배의 의의	인터폴 사무총국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는 국제 도피범, 실종자, 우범자 및 장물 등 인적·물적 수배 대상에 대한 상세 정보를 각 회원국에 배포하여 국제범죄에 대한 공동 감시체제를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사무총국 및 각 회원국간에 신속한 국제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수배대상을 발견, 색출하고 궁극적으로는 각종 국제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기구 내의 자체 수사권을 동원하여 범인을 추적·수사함(x)) → 인터폴은 범죄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아닌.	
종 류	적색수배서	Red Notice : Form 1 (1) 국제체포수배서 (2) 일반형범을 위반하여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범죄인인도를 목적으로 발행함. (3)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찰이 피수배자를 발견할 때 긴급인도 구속을 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범죄인 인도법에 정하는 구금의 청구·정식인도요구 등의 절차가 진행됨. (4) 적색 수배서에 의한 긴급인도구속은 범인인도전 절차의 핵심을 이룸.
	청색수배서	Blue Notice : Form 2 (1) 국제정보조회수배서 (2) 수배자의 신원·전과 및 소재확인 목적 (3) 오른쪽 위에 청색 4각마크가 표시되어 있음. (4) 일반형범위반자로 범인인도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자의 소재파악을 위해 수배자의 신원 및 전과파악, 범인 소재확인을 목적으로 발행됨.
	녹색수배서	Green Notice : Form 3 (1) 국제경고수배서(상습국제범죄자 통보, 중요국제범죄자 동향파악) (2) 상습범이거나 재범 우려 국제범죄자의 동향을 파악하여 범죄 예방 목적으로 발행함. (3) 전과의 정도·범죄종류·국제범죄조직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중요한 국제적 범죄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발행함.
	황색수배서	Yellow Notice : Form 4 (1) 가출인 수배서 (2) 가출인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신원파악 목적
	흑색수배서	Black Notice : Form 5 (1) 변사자(사망자) 수배서 (2) 신원불상 사망자 또는 가명사용 사망자 신원파악 목적 (3) 시체의 사진과 지문·치아상태·문신 등 신체적 특징·의복 및 소지품의 상표 등 사망자의 신원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수록.
	장물수배서	Stolen Property Notice (1) 도난 또는 불법취득 물건·문화재 등 수배서 (2) 상품적 가치 및 문화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발행됨. (3) 장물의 특징과 사진 등이 첨부되어 있음.
	범죄수법수배서(자주색수배서)	Modus Operandi, Purple Notice (1) 세계 각국에서 범인들이 범행 시 사용한 새로운 범죄수법 등을 사무총국에서 집중 관리하고 이를 각 회원국에 배포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예방과 수사자료로 활용케하고 또한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자료로 이용케 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2) 사무총국에서는 이를 국제수배서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있으나 단순한 범죄정보의 자료라 할 수 있음. (3) 수배서 가운데 엷은 자주색 4각마크가 표시되어 있음.
	보안경고(오렌지수배서)	Security Alert, Orange Notice 2004년부터 폭발물·테러범(위험인물) 등에 대하여 보안을 경고하기 위하여 발행
	INTERPOL-U N수배서	INTERPOL-UN Notice UN과 INTERPOL이 협력하여 국제테러범 및 테러단체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발행함.
발 행	(1) 외교경로를 통하지 않고 인터폴을 이용하여 사무총국에서 국제수배서를 발행함. (2) 긴급한 경우 우선 인터폴 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무총국 및 각 회원국에게 수배의뢰한 후 소정의 양식으로 사무총국에	

	국제수배서 발행. (3) 사무총국은 각 회원국에서 수배 의뢰한 것을 종합하여 월1회 국제수배서를 발행하고 이를 각 회원국에 배포함. ↳ 청색 및 황색수배서 등은 사무총국의 재량으로 발행.
취 소	(1) 수배자검거·시효완성·범인인도·소재확인·신원파악·장물회수 등 수배취소사유 발생시에는 사무총국에 통보하며, 사무총국은 이를 종합하여 월2회 수배해제를 각 회원국에 통보. (2) 녹색수배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하지 않으며, 이것은 수배요청국의 재량에 의해 취소할 수 있을 뿐임.
국제 수배자 및 장물 발견시 조치사항	(1) 국제수배자 및 장물 발견시의 조치사항은 각 국제수배서에 기록되어 있으나, 원칙적으로 대상물을 발견한 때에는 사무총국 및 수배요청국에 통보하여 외교적 절차를 밟아 해결. (2) 적색수배서의 경우 이를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로 인정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국제수배자 발견 즉시 체포와 범죄인도절차에 따라 신병인도가 가능함. ↳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에는 즉시 체포하지 못하고(↳ 즉시 체포한 후(x)) 소재확인 및 계속 동향을 감시하고 수배국에 입국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수배국에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한국경찰이 외국관련 사건 인지도 KNCB에 보고·통보해야 하는 사건	(1) 외국인 또는 외국과 관련된 국내 사건 (2) 국외사건 (3) 피의자 해외도주사건 (4) 해외에 수사관을 파견할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 (5) 민간 항공기 납치 또는 불법 방해 사건 (6) 각종 위조범(통화·여행자 수표 등) 및 마약관련 사건 (7) 외교채널을 통하여 외국의 법집행기관의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건 (8) 기타 인터폴을 통해 외국 경찰과 협조 요청할 필요가 있는 사건
KNCB의 처리요령	한국 인터폴(KNCB)에서 국제수배서 및 수배전문을 접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함. (1) 콘트롤 번호,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수배국가, 죄명, 통보사항 등 필요한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함. (2) 색인명부를 인쇄하여 법무부장관(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출입국 관리망에 입력함. (3) 수배자 입국 시 관할 지방경찰청에 전통 하달하여 수배 대상별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시함.
적색수배자 입국시 관할 경찰서 조치요령	(1) 수배자 여부를 컴퓨터로 재확인한 후 수배자의 동향을 24시간 감시함. (2)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 외사과(계)에 보고하여 필요한 인원을 지원받음. (3) 수배자가 타관할로 이동한 경우 이동한 경찰서 외사요원에게 동향감시를 인계한 후 경찰청으로 즉보함. (4) 인수받은 경찰서는 수배자 출국시까지 동향감시하고 그 결과를 매일 경찰청에 즉보함(↳ 출국 후 그 결과를 매주 경찰청에 즉보함(x)).
국제공조수사 관련 구비서류	(1) 피의자 인적사항(여권상 영문성명, 여권번호) (↳ 피의자 인적사항(한글 및 한자표기)(x)) (2) 범죄사실(송치의견서 사본 등 첨부) (3) 도주예상국 및 은신처(영문 등 현지어 표기), 출국기록(일시·국가) (4) 구속 또는 체포영장 사본 (5) 여권 행정제재 공문 사본(외교부 여권과에 요청) (6) 출입국규제(입국 시 통보요청) 공문 사본(경찰청 수사과 → 법무부) (7) 피의자 특정 관련 자료(최근 사진, 십지지문, 신체 특이사항 등) (8) 기타 관련 사항(예 피의자 지명수배 전산입력요구서)
국외도주 지명수배자 수사를 위한 인터폴 활용법	(1) 관할관서는 위의 국제공조수사 관련 구비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2) 관할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각 지방청 외사과(계) 경우, 경찰청 외사수사과 인터폴계로 피의자에 대한 국제공조수사 요청을 함. (3) 경찰청에서는 피의자 도주 예상국 인터폴에 피의자 소재수사 및 강제추방요청을 함. (4) 해외주재관을 통한 주재국 관련 당국과의 협조조치를 함. (5) 도주국이 불분명한 경우 중요 수배자에 대하여는 인터폴 사무총국에 인터폴 적색수배(인터폴 전회원국에 범죄인체포를 요청하는 수배)를 요청함(↳ 도주예상국에만 인터폴 적색수배요청을 한다(x)). (6) 상대국에서 피의자를 발견한 때에는 ① 범죄인도조약 체결국인 경우 : 범죄인도조약에 의거 법무부장관에게 외교경로를 통한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고 제3국으로의 도주방지를 위해 상대국 인터폴에 긴급인도구속을 요청함. ② 범죄인도조약 미체결국인 경우 : ㉠ 여권무효화조치 또는 ㉢ 해외주재관이나 상대국 인터폴을 통해 강제추방을 요청하거나 ㉡ 연고선을 통해 자진귀국을 설득함.
적색수배 요청기준	(1)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관련사범 (2) 폭력조직 중간보스 이상 조직폭력사범 (3) 다액(50억 원 이상)경제사범

(4) 기타 수사관서에서 특별히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중요사범

